

## 2026년도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 공고

제주시에서는 소득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제주시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6년 1월 22일

제주시장

### 접수 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2026. 1. 1.~ 2026. 12. 18.
  - ※ 26년 12월 출산자: 2027년 신청 가능
  - ※ 상기 접수 기간 내라도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접수 기간 종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추가 변경 공고가 있을 수 있음
- 접수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격

- 당해연도 출산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한 1인 여성 소상공인
  - 「고용보험법」상 출산 관련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소상공인
  - 출산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 출생 자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출생 등록한 소상공인
  - 제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 전년도 매출액 연 1,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 발생 소상공인
- 단, 아래 조건의 1인 여성 소상공인은 한시적 예외 적용(2026. 2. 27. 까지)
  - 2025년 12월 출산한 1인 여성 소상공인
  - 2025년 1~11월 출산하여 2025년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을 받은 1인 여성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월 30만원 × 3개월(총 90만원)
- 지급방식: 90만원 일괄 지급

## 단계별 역할

-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제주시: 지원자격 최종 확인 및 출산 급여 지원

## 제출 서류

-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신청서 1부
- 소상공인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매출액 증빙 서류 1부
  - ※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카드집계표 등 소득 발생 입증 자료
- 주민등록등본 1부
  - ※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같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자녀 초본
- 소상공인(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주소				
<b>사업장 정보</b>				
사업장명		사업자등록 번호		
사업 시작일		전년도 매출액 또는 월 매출액	(원)	
사업장 주소				
<b>출산(자녀) 정보</b>				
출산일 (생년월일)		성명	출생신고 지역	<input type="checkbox"/> 제주 <input type="checkbox"/> 제주외
<b>입금계좌 정보</b>				
입금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p>▶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상공인확인서 1부</li> <li>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li> <li>3. 주민등록등본 1부</li> <li>4. 사업자등록증 1부</li> <li>5. 매출액 증빙자료 1부</li> <li>6. 통장사본(본인명의) 1부</li> </ol>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_____ (서명)</p>				
<b>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b>				
<p>본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열람·제공받을 행정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p> <p>1. 주민등록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명 4. 소득금액증명서 및 매출액 증빙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p> <p style="text-align: center;">성 명: _____ (서명)</p>				
<b>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b>				
<p>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p> <p>귀하의 개인정보는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수집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p> <p>가. 서비스제공을 위한 본인 확인 및 관리.                      나. 출산급여 신청 및 관련 서류 검토                  다. 신청자에 대한 통지 및 안내                                      라.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 이행                  마. <u>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및 출산급여 지원 대상자 대상 확인</u></p> <p>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p> <p>·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출산관련 증명</p> <p>3.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p> <p>귀하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이용 동의</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는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p style="text-align: right;">성 명: _____ (서명)</p>				

# 위 임 장

수 입 자 (위임을 받는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자 (위임을 하는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 \_\_\_\_\_ 는(은) 수입자 \_\_\_\_\_ 에게  
1인 여성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서류작성, 지급 청구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 붙임 1.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2.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2026년 월 일

위 임 자 : (인)

## 참고

## 소상공인 확인서 온라인 발급 방법

###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사이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 확인서 발급 절차(반드시 순서대로 진행) 홈페이지 화면 하단에 표시되 있음



### □ 신청대상: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 발급기준: 업종별 직전 3년 평균매출액과 근로자 수 기준 발급

### 소기업.소상공인의 구분

1. 식료품 제조업
2. 음료 제조업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7.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 전기장비 제조업
13. 그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 전기 제조업

1. 담배 제조업
2. 섬유제품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8.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규모	상시근로자수	규모
제조업 (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소기업	10명 미만	소상공인
제조업 (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소기업	10명 미만	소상공인
전기, 가스, 수도사업	120억원 이하	소기업	5명 미만	소상공인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80억원 이하	소기업	5명 미만	소상공인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소기업	5명 미만	소상공인
도, 소매업	50억원 이하	소기업	5명 미만	소상공인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소기업	5명 미만	소상공인
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 업	30억원 이하	소기업	5명 미만	소상공인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	소기업	5명 미만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소기업	5명 미만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관련 문의: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상공인과(☎ 064-710-2525)